

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211
----------	------

2019년 12월 20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
2.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8일
3. 상정일자 : 제290회 정례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
【2019년 12월 16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나백주 시민건강국장)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특별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서울특별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,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등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시민과 함께 서울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.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을 위한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 수립 발표 이후 자문관 및 위원회의 역할축소에 따라 운영 횟수 등을 조정하고

분과위원회를 2030수립 핵심가치 방향에 맞추어 통·폐합 (10개→7개 분과) 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먹거리시민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먹거리정책자문관 조문 변경(안 제10조)

나. 먹거리시민위원회의 구성 변경(안 제23조)

- 위원을 총 105명(당연직 제외)으로 구성하도록 변경

다.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장 연임 횟수 변경(안 제24조)

-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

라. 위원회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변경(안 제26조)

마. 기획조정위원회 변경(안 제27조)

- 위촉위원 중 지명된 기획조정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, 기획조정위원회 회의는 격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, 위원은 25명 이내로 구성

바. 분과위원회 변경(안 제28조)

- 분과위원회 10개 종류 중 7개를 통폐합하여 4개의 분과위원회로 조정(먹거리생태·상생분과, 먹거리건강·보장분과, 먹거리공동체분과,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)하여 총 7개의 분과위원회 운영으로 개편
- 분과위원회 회의는 격월 1회 개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(2) 입법예고(2019. 9. 11.~ 10. 1.) 결과 : 별도 첨부

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: 별도 첨부

Ⅲ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개정안의 취지

- 개정안은 먹거리시민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조정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의 제출한 안으로 먹거리시민위원회의 분과 수의 조정, 회의 개최횟수의 조정 등을 통하여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자 하는 안임.

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가.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

- 먹거리시민위원회는 「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」 제21조¹⁾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동 조례 제22조²⁾에 의하면 위원회는 먹거리 정책 및 방향 정책의 통합·조정,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의 기능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.
- 개정안(제23조)은 먹거리 시민위원회의 위원수를 105명으로 줄이고, 분과위원회를 현재의 10개에서 7개로 줄이는 안으로 먹거리시

1) 제21조(위원회의 설치) 시장은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·발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2) 제22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먹거리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·조정
2.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
3. 먹거리정책 지표 설정 및 공표
4. 시민사회, 산업계, 학계,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상호 협력
5.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관련 협치 모델 개발 및 사업추진
6.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
7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민위원회의 회의개최실적을 살펴본 결과 분과위원회 별로 회의 개최실적이 상이하고 참석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먹거리시민위원회의 활동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.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.

현	행	개	정	안
제2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2 명을 포함하여 <u>150명 이내의 위원</u> <u>으로 구성한다.</u>		제23조(구성) ①----- ----- <u>105명</u> <u>이내</u> <u>(당연직 제외)의 위원으로 구성하</u> <u>되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</u> <u>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</u> <u>한다.</u>		
② ~ ⑤ (생략)		② ~ ⑤ (현행과 같음)		

<먹거리 시민위원회 분과별 회의개최 실적>

연번	분과위원회 명	회의개최실적	참석율 ³⁾
1	공공급식분과위원회	10	56.0%
2	도시농업분과위원회	7	73.3%
3	식품안전분과위원회	7	57.5%
4	도농상생분과위원회	16	62.6%
5	지속가능식생활분과(영양과건강)	11	53.5%
6	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(먹거리산업)	13	45.6%
7	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	18	61.7%
8	먹거리문화교육홍보위원회	15	62.7%
9	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	14	64.6%
10	먹거리복지분과위원회	12	53.3%
	전체평균	12.3(회)	59.1%

3) 위원이 중도사퇴하는 경우 위원회 구성원이 줄어든 것을 반영한 실질 참석율임. 예를 들어 15명 정원에 10명이 참석하는 경

- 또한 현행 조례는 먹거리시민위원회의 각 분과별 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먹거리시민위원회의 각 분과 회의가 매월 개최되지 않은 상황으로 격월 1회로 개정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 할 것임(제28조).
- 개정안 제26조는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한 조정안으로 분기 1회를 반기 1회로 바꾸는 안임.

현행	개정안
제26조(위원회 회의 등) ① (생략)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, 정기회는 <u>분기</u>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	제26조(위원회 회의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반기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- 먹거리시민위원회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많은 분과의 수와 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의 피로감이 있는 상황으로 먹거리시민위원회가 심도 있고 밀도 높은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. 따라서 동 조례 개정안을 통해 먹거리시민위원회의 분과 수 조정과, 먹거리 시민위원회 회의 횟수 조정을 통해 먹거리시민위원회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우 66.6%가 되나 위원이 중도에 사퇴하여 12명이 정원이 되는 경우 83.3%로 계산됨.

현행	개정안
<p>제28조(분과위원회) ① <생략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공공급식분과위원회</u> 2. <u>도시농업분과위원회</u> 3. <u>식품안전분과위원회</u> 4. <u>도농상생분과위원회</u> 5. <u>지속가능식생활분과(영양과건강)위원회</u> 6. <u>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(먹거리산업)위원회</u> 7. <u>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</u> 8. <u>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회</u> 9. <u>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</u> 10. <u>먹거리복지분과위원회</u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<u>월1회</u> 하되,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다.</p>	<p>제28조(분과위원회) ① <생략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<u>먹거리생태·상생분과</u> 5. <u>먹거리건강·보장분과</u> 6. <u>먹거리공동체분과</u> 7. <u>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</u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격월 1회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※ 분과위원회별 세부사항은 원안 참조

나. 민간인 자문관 규정과 관련하여

- 개정안 제10조는 먹거리정책자문관을 두는 규정으로 현행 조례는

먹거리정책자문관으로 직책명을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「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민간전문가를 둘 수 있게 하고 있음.

- 현행조례와 개정조례는 형식상 차이가 존재할 뿐 내용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. 다만, 조례에 해당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제출한 2020년 예산(안)에는 먹거리시민위원회의 민간전문가 관련 예산이 없는 상황으로 현 시점에서 먹거리시민위원회와 관련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「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는 위촉할 수 있음.⁴⁾

현행	개정안
제10조(먹거리정책자문관)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먹거리정책자문관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.	제10조(민간전문가)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.

4) 「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. 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이는 개별 조례에 근거가 없어도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할 것임.

3 입법예고관련

-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이견은 존재하지 않음. 입법예고결과와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조례 개정 후 제2기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며 먹거리전략 2030의 방향성을 고려한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.

입법예고결과 요약서 (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		
의견제출자	제출 의견	조치 내용(반영, 미반영)
○ 먹거리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윤병선위원장 외 (9. 27.)	○ 먹거리시민위원회와 협의 등을 통한 2차 조례개정 재추진 ○ 공공급식분과, 도시농업분과, 식품안전분과 유지 외 분과 재논의	○ 시의회 설득하여 제출기한 연기(10.16. →11.12.까지) ○ 먹거리시민위원회 공공급식분과, 도시농업분과, 식품안전분과 유지 반영
○ 먹거리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조현선 외 19명 (10. 1.)	○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 개정조례 공포·시행에 따른 제2기 위원회 신속히 구성 및 위원회와 협의를 통한 조례개정 요청	○ 조례개정 후('20. 1. 9.) 제2기위원회 공개모집 구성
○ 먹거리전략 2030 워킹그룹 김철규 위원장 외 (10. 2.)	○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개편방향 제안 - 조례에 의해 설치된 '공공급식 분과, 도시농업 분과, 식품안전 분과'는 별도 위원회로 유지 - 서울 먹거리전략 2030 방향성을 고려하여 시민위원회 개편(지속가능 먹거리환경 조성 분과, 먹거리보장 분과, 먹거리공동체 활성화 분과, 먹거리 문화교육홍보 분과)	○ 먹거리시민위원회 공공급식분과, 도시농업분과, 식품안전분과 유지 반영 ○ 서울 먹거리전략 2030 방향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 먹거리환경 조성 분과, 먹거리보장 분과, 먹거리공동체 활성화 분과, 먹거리 문화교육홍보 분과 반영
○ 복지분과위원회 변혜진 위원 (10. 18.)	○ 먹거리정책자문관 조문은 삭제 하지 말고 유지 의견	○ 필요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먹거리정책자문관을 위촉 운영할 수 있음
○ 생태분과위원회 최용재 위원 (10. 22.)	○ 생태분과위원회 유지 의견	○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재논의

4 종합의견

-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위원 수 조정, 분과위원회의 수 조정, 조례를 인용한 민간전문가 위촉 규정 및 분과위원회 회의 수와 먹거리시민위원회 전체회의 수 조정을 하여 먹거리시민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제출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1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11월 7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서울특별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,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등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시민과 함께 서울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.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을 위한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 수립 발표 이후 자문관 및 위원회의 역할축소에 따라 운영 횟수 등을 조정하고 분과위원회를 2030수립 핵심가치 방향에 맞추어 통·폐합 (10개→7개 분과) 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먹거리시민위원회 운영을 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먹거리정책자문관 조문 변경(안 제10조)

나. 먹거리시민위원회의 구성 변경(안 제23조)

- 위원을 총 105명(당연직 제외)으로 구성하도록 변경

다.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장 연임 횟수 변경(안 제24조)

-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

라. 위원회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변경(안 제26조)

마. 기획조정위원회 변경(안 제27조)

- 위촉위원 중 지명된 기획조정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, 기획조정위원회 회의는 격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, 위원은 25명 이내로 구성

바. 분과위원회 변경(안 제28조)

- 분과위원회 10개 종류 중 7개를 통폐합하여 4개의 분과위원회로 조정(먹거리생태·상생분과, 먹거리건강·보장분과, 먹거리공동체분과,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)하여 총 7개의 분과위원회 운영으로 개편
- 분과위원회 회의는 격월 1회 개최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(2) 입법예고(2019. 9. 11.~ 10. 1.) 결과 : 별도 첨부

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민간전문가)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.

제23조제1항 중 “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”를 “105명 이내(당연직 제외)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”로 한다.

제24조제2항 중 “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분기”를 “반기”로 한다.

제27조제2항 중 “기획조정위원장”을 “지명된 기획조정위원장”으로, “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30명”을 “25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

중 “월”을 “격월”로 한다.

제28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월 1회”를 “격월 1회로”로 한다.

4. 먹거리생태·상생분과 : 먹거리 관련 도농상생 활성화,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회복력, 먹거리 자원순환(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화 등)등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 및 정책제안 등 지원활동
5. 먹거리건강·보장분과 : 지속가능한 건강한 식생활 증진(영양부족, 비만 등 비전염성 질환)을 위한 지침개발, 먹거리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, 재난 대비 서울시민의 먹거리 보장전략 및 정책제안 등 지원활동
6. 먹거리공동체분과 :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, 이해관계자(시-자치구-먹거리공동체 등) 협력강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제안, 먹거리공동체와 지역사회 먹거리 자원 발굴 및 전략구축 등 지원활동
7.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 : 지속가능한 먹거리 서울구현을 위한 먹거리시민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활동, 지속가능한 먹거리문화 정착 및 행복한 먹거리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, 먹거리 전략 2030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활동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먹거리정책자문관)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먹거리정책자문관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민간전문가)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.</p>
<p>제2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<u>150명 이내</u>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	<p>제23조(구성) ①----- -----<u>105명</u> 이내(당연직 제외)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</p>
<p>② ~ ⑤ (생략)</p>	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4조(위원장 등) ① (생략)</p>	<p>제24조(위원장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<u>2차례</u>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p>	<p>② ----- ----- <u>한 차례</u>만 연임할 수 있다.</p>
<p>③ ~ ⑤ (생략)</p>	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6조(위원회 회의 등) ① (생략)</p>	<p>제26조(위원회 회의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, 정기회는 <u>분기</u>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</p>	<p>② ----- ----- <u>반</u> <u>기</u>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 <p>제27조(기획조정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 기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으로 하며, <u>기획조정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기획조정위원회는 기획조정위원장 2명, 당연직 위원, 제28조에 따른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등 <u>30명</u>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기획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</p> <p>제28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</p>	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7조(기획조정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명된</u> <u>기획조정위원장</u>----- --- <u>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5</u> <u>명</u>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<u>격</u> <u>월</u> ----- -----.</p> <p>제28조(분과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의 종류 및 각 분과위원회가 심의·자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,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<u>공공급식분과위원회</u> : 도농상생을 통한 공공급식의 확산 등을 위한 자문 및 정책개발, 공공급식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, 영양개선, 공공급식의 건강먹거리 조달체계 확립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
<p>2. <u>도시농업분과위원회</u> : 도시농업 활성화,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교육 및 홍보 등의 활성화 사업</p>	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3. <u>식품안전분과위원회</u> :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시민교육, 식품안전사고 조기 대응 등을 위한 자문, 정책개발 및 활성화 사업</p>	<p>3. (현행과 같음)</p>
<p>4. <u>도농상생분과위원회</u> : 먹거리와 관련한 도농상생 시책 및 사업, 도농교류 활성화</p>	<p>4. <u>먹거리생태·상생분과</u>: 먹거리 관련 도농상생 활성화,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회복력, 먹거리 자원순환(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화 등)등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 및 정책제안 등</p>

현행	개정안
<p>5. <u>지속가능식생활분과(영양과 건강)위원회</u> : <u>지속가능한 건강한 식생활 증진과 지침 개발, 영양 부족과 비만 등 비전염성 질환(NCD), 보건과 먹거리 부분 통합 전략 및 정책 개발</u></p> <p>6. <u>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(먹거리산업)위원회</u> : <u>먹거리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, 먹거리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협력 강화</u></p> <p>7. <u>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</u> : <u>시 자치구와의 협력, 지역사회 먹거리 자원 개발 및 지원, 활성화 사업</u></p> <p>8. <u>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</u></p>	<p><u>지원활동</u></p> <p>5. <u>먹거리건강·보장분과: 지속가능한 건강한 식생활 증진(영양부족, 비만 등 비전염성 질환)을 위한 지침개발, 먹거리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, 재난 대비 서울시민의 먹거리 보장전략 및 정책제안 등 지원활동</u></p> <p>6. <u>먹거리공동체분과: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, 이해관계자(시-자치구-먹거리공동체 등) 협력강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제안, 먹거리공동체와 지역사회 먹거리 자원 발굴 및 전략구축 등 지원활동</u></p> <p>7. <u>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: 지속가능한 먹거리 서울구현을 위한 먹거리시민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활동, 지속가능한 먹거리문화 정착 및 행복한 먹거리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, 먹거리 전략 2030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활동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회 : 지속가능한 먹거리 서울 구현을 위한 교육, 홍보 활동, 지속가능한 먹거리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활동</u></p> <p>9. <u>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 : 도시회복력, 먹거리 자원 순환,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 해결</u></p> <p>10. <u>먹거리복지분과위원회 : 먹거리취약계층, 취약지역 등의 먹거리 접근성 제고 활동</u>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<u>월1회</u> 하되,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다.</p>	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격월 1회로</u> ----- ----- -----.</p>

입법예고결과 요약서 (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		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(반영, 미반영)
○ 먹거리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윤병선위원장 외 (9. 27.)	○ 먹거리시민위원회와 협의 등을 통한 2차 조례개정 재 추진 ○ 공공급식분과, 도시농업분과, 식품안전분과 유지 외 분과 재논의	○ 시의회 상임위 설득하여 제출기한 연기(10.16.→11.12.까지) ○ 먹거리시민위원회 공공급식분과, 도시농업분과, 식품안전분과 유지 반영
○ 먹거리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조현선 외 19명 (10. 1.)	○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 개정조례 공포·시행에 따른 제2기 위원회 신속히 구성 및 위원회와 협의를 통한 조례개정 요청	○ 조례개정 후('20. 1. 9.) 제2기위원회 공개모집 구성
○ 먹거리전략 2030 워킹그룹 김철규 위원장 외 (10. 2.)	○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개편방향 제안 - 조례에 의해 설치된 '공공급식분과, 도시농업 분과, 식품안전분과'는 별도 위원회로 유지 - 서울 먹거리전략 2030 방향성을 고려하여 시민위원회 개편(지속가능 먹거리환경 조성 분과, 먹거리보장 분과, 먹거리공동체 활성화 분과, 먹거리 문화교육홍보 분과)	○ 먹거리시민위원회 공공급식분과, 도시농업분과, 식품안전분과 유지 반영 ○ 서울 먹거리전략 2030 방향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 먹거리환경 조성 분과, 먹거리보장 분과, 먹거리공동체 활성화 분과, 먹거리 문화교육홍보 분과 반영
○ 복지분과위원회 변혜진 위원 (10. 18.)	○ 먹거리정책자문관 조문은 삭제하지 말고 유지 의견	○ 필요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먹거리정책자문관을 위촉 운영할 수 있음
○ 생태분과위원회 최용재 위원 (10. 22.)	○ 생태분과위원회 유지 의견	○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재 논의
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건	조 치 내 용
<p>○ 먹거리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000위원장의 (10. 31.)</p>	<p>○ 먹거리정책자문관 조문 삭제 관련 - '서울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들 수 있다'로 조문을 변경</p>	<p>○ 조문변경 조문 변경(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울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) 반영</p>
	<p>○ 위원회 위촉직 공동위원장 연임 제한(2차례 → 연임 없음) 관련 - 1차례에 한하여 연임으로 변경요청</p>	<p>○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위촉하여 편중된 위원회운영 및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고, 의견의 다양성이 조율될 수 있도록 참여확대 필요성에 의하여 위촉직 공동위원장 임기를 1차례에 한하여 연임</p>
	<p>○ 기획조정위원회 위촉직 공동위원장 연임 제한(2차례 → 연임없음)관련 - 1차례에 한하여 연임으로 변경요청</p>	<p>○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위촉하여 편중된 위원회운영 및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고, 의견의 다양성이 조율될 수 있도록 참여확대 필요성에 의하여 지명된 기획조정위원장 임기를 1차례에 한하여 연임</p>
	<p>○ 기획조정위원회 정기회의 변경 (월 1회 → 분기 1회) 관련 - 월1회 로는 실질적인 활동의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격월1회로 제안</p>	<p>○ 기획조정위원회 정기회의를 격월 1회 반영</p>
	<p>○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·자문 사항 조정(10개 분과 → 6개 분과) 관련 - 조례에 의해 설치된 '공공급식 분과, 도시농업 분과, 식품안전 분과'는 별도 위원회로 유지 - 서울 먹거리전략 2030 방향성을 고려 '먹거리생태·상생분과, 먹거리보장·건강분과, 먹거리공동체분과,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' - 분과위원회 수 총 7개 분과</p>	<p>○ 분과위원회 수 총 7개 분과 반영 - 법령, 조례에 의해 설치된 '공공급식분과, 도시농업분과, 식품안전분과' 유지 - 2030 방향성을 고려 '먹거리생태·상생분과, 먹거리보장·건강분과, 먹거리공동체분과,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' 반영</p>
	<p>○ 분과위원회 정기회의 변경 (월 1회 → 분기 1회) 관련 - 월1회로는 실질적인 분과활동의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격월1회 제안</p>	<p>○ 분과 정기회의를 격월1회 반영</p>

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본 개정안은 먹거리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통·폐합 하여 위촉위원 수가 150명에서 105명으로 축소되는 내용이며, 위원회 운영으로 예상되는 105명 회의 수당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이 예상되는 사항임
(산출근거 : 105명×150,000원×6회=94,500천원)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유효연(02-2133-4709)